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추가 지원방안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2024. 9. 9.

보건복지부

목 차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1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6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14

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21

5. 추석 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27

6.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33

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38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❶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50% 한시적 추가 가산**

- 추가 가산되는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❷ 적용대상

○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❸ 적용기간

○ 2024년 8월 28일 ~ 9월 30일

❹ 신청 및 안내

○ 코로나19 유행 대비 적용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IE200~IE209)' 와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IE30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255.79**	**20,770**
IE3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383.69	31,160
IE3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358.11	29,080
IE303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232.33**	**18,870**
IE3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348.50	28,300
IE3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325.26	26,410
IE306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5.79**	**20,770**
IE3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383.69	31,160
IE3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358.11	29,080
IE309	**(비상)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II**	**255.79**	**20,770**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I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V2200	*	1	1	*	20240828
01	03	0002	1	IE200	*	1	1	*	20240828
01	03	0003	1	IE300	*	1	1	*	20240828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 청구방법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2-1</td><td>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td><td>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u>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u>함(위탁진료 포함*)
*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td></tr>
<tr><td>2-2</td><td>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td><td>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td></tr>
<tr><td>2-3</td><td>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td><td>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td></tr>
<tr><td>2-4</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td></tr>
<tr><td>2-5</td><td>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td><td>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td></tr>
<tr><td>2-6</td><td>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수가 청구방법은?</td><td>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 한시적 수가 코드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td></tr>
<tr><td colspan="3">(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변경일</th></tr>
<tr><td>01</td><td>03</td><td>0001</td><td>1</td><td>IE200</td><td>*</td><td>1</td><td>1</td><td>*</td><td>20240828</td></tr>
<tr><td>01</td><td>03</td><td>0002</td><td>1</td><td>IE300</td><td>*</td><td>1</td><td>1</td><td>*</td><td>20240828</td></tr>
<tr><td>L</td><td>81</td><td>0003</td><td>1</td><td>V2200</td><td>*</td><td>1</td><td>1</td><td>*</td><td>20240828</td></tr>
</table></td></tr>
</table>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❶ 주요내용

○ 추석연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❷ 적용대상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 **'24.8.30. 기준 111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❸ 적용기간

○ 9월 13일 ~ 9월 22일(10일간)

❹ 신청 및 안내

○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응급 진찰료II 수가

□ 한시적 응급 진찰료 확대 수가

(단위: 원)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016	(비상)응급 진찰료II	15,000

참고2 응급 진찰료Ⅱ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1-1</td><td>응급 진찰료Ⅱ 를 산정하는 기관은?</td><td>「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은 <u>'24.8.30. 신고현황</u>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폐업 후 재개설, 개설자 변경 등의 사유로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td></tr>
<tr><td>1-2</td><td>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산정 방법은?</td><td>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td></tr>
<tr><td>1-3</td><td>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td><td>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td></tr>
<tr><td>1-4</td><td>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를 진료한 경우 산정 방법은?</td><td>기존 한시적 가산수가 '응급 진찰료'와 신설된 '응급 진찰료Ⅱ'를 동시 산정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변경일</th></tr>
<tr><td>01</td><td>03</td><td>0001</td><td>1</td><td>AA155</td><td>*</td><td>1</td><td>1</td><td>*</td><td>20240913</td></tr>
<tr><td>01</td><td>03</td><td>0002</td><td>1</td><td>IE006</td><td>*</td><td>1</td><td>1</td><td>*</td><td>20240913</td></tr>
<tr><td>01</td><td>03</td><td>0003</td><td>1</td><td>IE016</td><td>*</td><td>1</td><td>1</td><td>*</td><td>20240913</td></tr>
</table>
</td></tr>
<tr><td>1-5</td><td>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td><td>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td></tr>
<tr><td>1-6</td><td>(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td><td>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td></tr>
<tr><td>1-7</td><td>응급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Ⅱ를 산정가능 한지?</td><td>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수가 산정 불가</td></tr>
<tr><td>1-8</td><td>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Ⅱ를 산정가능 한지?</td><td>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수가 산정 불가</td></tr>
</table>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응급 진찰료Ⅱ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3.~2024.9.22.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2024년 9월 13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3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22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6	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Ⅱ 청구방법은?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Ⅱ'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를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6	*	1	1	*	20240913
01	03	0002	1	IE016	*	1	1	*	20240913
L	81	0003	1	AA155	*	1	1	*	20240913

별첨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시설 목록(9.13.~9.22.)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101407	강남베드로병원	종합병원
2	경남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3	대전	3410032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4	전남	36100749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5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종합병원
6	서울	11101423	기쁨병원	종합병원
7	경기	31101496	뉴대성병원	종합병원
8	서울	11101181	미즈메디병원	종합병원
9	경남	38100347	베데스다복음병원	종합병원
10	경기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11	광주	36100943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2	광주	36100960	선한병원	종합병원
13	서울	11101245	씨엠병원	종합병원
14	서울	11101342	우리들병원	종합병원
15	울산	38100690	울산엘리야병원	종합병원
16	울산	38100649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천동강병원	종합병원
17	경남	38100380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종합병원
18	서울	11101156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종합병원
19	충남	34100407	의료법인예당의료재단예산종합병원	종합병원
20	강원	32100183	의산의료재단강릉고려병원	종합병원
21	경기	31100198	인산의료재단메트로병원	종합병원
22	서울	11101351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베스티안서울병원	종합병원
23	부산	21100306	재단법인일신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종합병원
24	전북	35100184	전주고려병원	종합병원
25	경기	31101283	조은오산병원	종합병원
26	서울	11100842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종합병원
27	서울	11100257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종합병원
28	광주	36101044	해피뷰병원	종합병원
29	울산	38201771	(의)내경의료재단울산제일병원	병원
30	서울	11201509	강남고려병원	병원
31	서울	11207701	강남더드림병원	병원
32	서울	11207663	강남힐병원	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33	서울	11207515	강북으뜸병원	병원
34	서울	11207931	강서케이병원	병원
35	경북	37203860	계명대학교경주동산병원	병원
36	광주	36202355	광주열린병원	병원
37	울산	38202042	굿모닝병원	병원
38	충남	34203290	나은필병원	병원
39	대전	34202102	대전화병원	병원
40	경남	38205050	더 조은병원	병원
41	경기	31205704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병원
42	경기	31204422	동안산병원	병원
43	경기	31212115	매듭병원	병원
44	경남	38204711	메가병원	병원
45	경기	31211917	무척조은병원	병원
46	경기	31208657	문산중앙병원	병원
47	경기	31209351	바른마디병원	병원
48	경기	31203841	바른병원	병원
49	경남	38205521	본바른병원	병원
50	부산	21204781	빌리브세웅병원	병원
51	서울	11207272	사랑의병원	병원
52	충남	34201718	새금산병원	병원
53	서울	11203668	서울현대병원	병원
54	경기	31210627	성모윌병원	병원
55	경기	31203094	성심중앙병원	병원
56	경북	37201069	의료법인석촌의료재단성주무강병원	병원
57	부산	21203121	세웅병원	병원
58	부산	21204187	세일병원	병원
59	광주	36205222	송정사랑병원	병원
60	경기	31201687	수원중앙병원	병원
61	경남	38204649	시영의료재단 영동병원	병원
62	서울	11203315	신촌연세병원	병원
63	경기	31205194	양주예쓰병원	병원
64	경기	31204104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국제병원	병원
65	전남	36204901	여수한국병원	병원
66	경기	31203221	연세새로운병원	병원
67	경북	37203851	영주자인병원	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68	충남	34201645	예산명지병원	병원
69	충북	33200831	오창중앙병원	병원
70	경기	31209955	온누리병원	병원
71	경기	31210899	원병원	병원
72	강원	32200889	원주성모병원	병원
73	경기	31204058	윤서병원	병원
74	서울	11204605	은평연세병원	병원
75	부산	21203318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녹산병원	병원
76	경북	37200780	의료법인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병원
77	경남	38205599	의료법인 바른의료재단 바른병원	병원
78	대구	37201441	의료법인 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	병원
79	충북	33200645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병원
80	경남	38204690	의료법인 신의료재단 김해삼승병원	병원
81	울산	38205441	의료법인에스엠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병원
82	경북	37200500	의료법인건용의료재단 왜관병원	병원
83	서울	11201703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84	전남	36200794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 함평성심병원	병원
85	경기	31206417	의료법인일산복음병원	병원
86	충북	33201081	의료법인 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병원
87	경남	38201135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창녕서울병원	병원
88	경기	31207588	의료법인 청파의료재단 송탄중앙병원	병원
89	충북	33201129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	병원
90	강원	32201273	인성병원	병원
91	부산	21203890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부산병원	병원
92	경남	38201518	진주세란병원	병원
93	충북	33200955	청주현대병원	병원
94	충북	33201471	충주미래병원	병원
95	부산	21204098	큐병원	병원
96	경남	38205939	하나병원	병원
97	서울	11207124	한강수병원	병원
98	인천	3121096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병원
99	대구	37204793	행복한 병원	병원
100	경남	38203472	행복한병원	병원
101	충남	34200932	현대병원	병원
102	경기	31212484	혜성병원	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03	경기	31206476	화성유일병원	병원
104	전남	36205320	화순고려병원	병원
105	전남	36205052	화순성심병원	병원
106	부산	21201692	효성시티병원	병원
107	전남	36322342	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의원
108	인천	41364058	하늘정형외과의원	의원
109	경남	38335549	하동중앙의원	의원
110	인천	41325893	흑룡의원	의원
111	충북	33700000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❶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수가 보상

❷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 108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의 외래 방문 환자에게 진찰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❸ 적용기간

○ 8월 28일 ~ 9월 30일

❹ 신청 및 안내

○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2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단위: 원)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017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30,000

참고2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산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 '24.8.27. 기준으로 하며,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언제인지?	'24.8.28.~9.30. 중 공휴일은 일요일(9.1., 9.8., 9.15., 9.22., 9.29.)과 추석연휴기간(9.16., 9.17., 9.18.)에 해당함.
1-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에 방문 시 중복 산정 가능한지?	1회만 산정함.
1-5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6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7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8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9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2 청구방법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2-1</td><td>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td><td>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td></tr>
<tr><td>2-2</td><td>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td><td>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u>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u>(위탁진료 포함*)
*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td></tr>
<tr><td>2-3</td><td>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td><td>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td></tr>
<tr><td>2-4</td><td>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td><td>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td></tr>
<tr><td>2-5</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td></tr>
<tr><td>2-6</td><td>포괄수가에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청구방법은?</td><td>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외래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td></tr>
<tr><td colspan="3">(예시) 공휴일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변경일</th></tr>
<tr><td>01</td><td>03</td><td>0001</td><td>1</td><td>IE017</td><td>*</td><td>1</td><td>1</td><td>*</td><td>20240828</td></tr>
<tr><td>L</td><td>81</td><td>0002</td><td>1</td><td>AA155050</td><td>*</td><td>1</td><td>1</td><td>*</td><td>20240828</td></tr>
</table></td></tr>
<tr><td>2-7</td><td>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을 기재해야 하는지?</td><td>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 진료시각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형식: ccyymmddhhmm</td></tr>
</table>

별첨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목록(8.28.~9.30.)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206861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병원
2	서울	11207299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병원
3	부산	21202907	부산맘아동병원	병원
4	부산	21203172	아이(i)서울병원	병원
5	부산	21203369	행복한어린이병원	병원
6	부산	21203628	부산아동병원	병원
7	부산	21204055	금정어린이병원	병원
8	경기	31201873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	병원
9	경기	31208321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0	경기	31208495	튼튼어린이병원	병원
11	경기	31209254	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2	경기	31209840	센트럴아동병원	병원
13	경기	31210279	아이원병원	병원
14	경기	31211101	웰봄병원	병원
15	경기	31211381	김포아이제일병원	병원
16	경기	31211399	동탄성모병원	병원
17	인천	31212298	검단위키즈병원	병원
18	충북	33201226	아이웰어린이병원	병원
19	대전	34202455	조이병원	병원
20	충남	34202714	두정이진병원	병원
21	대전	34202943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22	대전	34203044	대전코젤병원	병원
23	대전	34203109	봉키병원	병원
24	대전	34203231	코젤병원	병원
25	전북	35202238	전주다솔아동병원	병원
26	전북	35202360	온누리아동병원	병원
27	광주	36201472	미래아동병원	병원
28	전남	36202991	목포아동병원	병원
29	광주	36203173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30	전남	36203203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병원
31	광주	36203530	우리아동병원	병원
32	전남	36203939	남악아동병원	병원
33	광주	36204510	한마음병원	병원
34	광주	36204633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
35	광주	36204773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36	광주	36205061	화정아동병원	병원
37	대구	37204840	열린아동병원	병원
38	경남	38202581	서울패밀리병원	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39	경남	38203774	거제아동병원	병원
40	경남	38204355	서울아동병원	병원
41	경남	38204606	아이사랑병원	병원
42	경남	38204614	서울아동병원	병원
43	경남	38204789	서울아동병원	병원
44	경남	38205459	서울아동병원	병원
45	경남	38205556	양덕서울아동병원	병원
46	경남	38206030	창원튼튼i병원	병원
47	경기	3110028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종합병원
48	경기	3110031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49	경기	311003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50	경기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51	경기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52	경기	3110115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53	강원	32100078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54	강원	3210015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종합병원
55	충북	33100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56	충북	3310006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57	충남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58	충남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59	충남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60	충남	3410016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61	전북	35100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62	전북	351000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63	경북	3710004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64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65	경북	3710035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종합병원
66	경북	3710039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67	경남	381000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68	서울	11100982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종합병원
69	서울	1120170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70	인천	31100023	인천기독병원	종합병원
71	경기	3110089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종합병원
72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73	경기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74	인천	31200451	의료법인해인의료재단 강화병원	병원
75	인천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76	경기	31204058	윤서병원	병원
77	경기	31204112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병원
78	경기	31204783	세종여주병원	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79	전북	35100036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종합병원
80	전북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종합병원
81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병원
82	전남	36100226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83	전남	36100234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84	전남	36100846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종합병원
85	광주	36100951	광주한국병원	종합병원
86	전남	3610097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87	광주	36101061	광주센트럴병원	종합병원
88	광주	36101079	상무병원	종합병원
89	전남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90	전남	36202240	의료법인 미나의료재단 여수문화병원	병원
91	전남	36204862	의료법인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병원
92	대구	37100327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종합병원
93	대구	37100491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종합병원
94	울산	38100151	서울산보람병원	종합병원
95	경남	38100380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종합병원
96	경남	38100398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종합병원
97	울산	38201771	(의)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	병원
98	강원	32100086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99	제주	391000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100	인천	31100015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01	경남	38204983	다나병원	병원
102	광주	36204251	아이맘아동병원	병원
103	제주	39302075	911매일의원	의원
104	제주	39309827	나우메디의원	의원
105	제주	39306348	탑동365일의원	의원
106	제주	39302962	연동365일의원	의원
107	제주	39307298	서귀포365일의원	의원
108	충북	33200891	의료법인 한미의료재단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병원

※ 98~108번(11개소)는 추가 지정된 요양기관

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❶ 주요내용

○ 추석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조제)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❷ 적용대상

○ **(대상기관)**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 (병·의원) 내원한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❸ 적용기간

○ 9월 14일 ~ 9월 18일(5일간)

❹ 신청 및 안내

○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약국 약제비의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 033-739-156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 한시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단위: 원)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100 (94100)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
ZE100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

참고2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 · 답변

의료기관

1 진료 지원금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추석연휴 운영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의료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7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2 청구방법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2-1</td><td>진료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td><td>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td></tr>
<tr><td>2-2</td><td>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td><td>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u>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함</u>(위탁진료* 포함)
*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td></tr>
<tr><td>2-3</td><td>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td><td>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td></tr>
<tr><td>2-4</td><td>2024년 9월 14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td><td>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4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18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td></tr>
<tr><td>2-5</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td></tr>
<tr><td rowspan="2">2-6</td><td>포괄수가에서 진료지원금 청구방법은?</td><td>외래 진료 후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td></tr>
<tr><td colspan="2">(예시) 추석연휴(9/15)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변경일</th></tr>
<tr><td>01</td><td>03</td><td>0001</td><td>1</td><td>IE100</td><td>*</td><td>1</td><td>1</td><td>*</td><td>20240915</td></tr>
<tr><td>L</td><td>81</td><td>0002</td><td>1</td><td>AA155050</td><td>*</td><td>1</td><td>1</td><td>*</td><td>20240915</td></tr>
</table></td></tr>
</table>

약 국

1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1-1</td><td>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td><td>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td></tr>
<tr><td>1-2</td><td>동일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조제지원금 산정 방법은?</td><td>제15장 약국 약제비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td></tr>
<tr><td>1-3</td><td>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 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조제지원금의 산정은?</td><td>각각 산정 가능함</td></tr>
<tr><td>1-4</td><td>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td><td>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td></tr>
<tr><td>1-5</td><td>약국 조제지원금 산정 방법은?</td><td>추석연휴기간 조제분에 한해서 제15장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하며,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함</td></tr>
<tr><td></td><td colspan="2">(예시)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추석연휴(9/15)에 조제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면허종류</th><th>면허번호</th></tr>
<tr><td>02</td><td>01</td><td>0001</td><td>1</td><td>Z1000</td><td>740</td><td>1</td><td>1</td><td>740</td><td></td><td></td></tr>
<tr><td></td><td></td><td>0002</td><td>1</td><td>Z2000050</td><td>2,100</td><td>1</td><td>1</td><td>2,100</td><td>4</td><td>12345</td></tr>
<tr><td></td><td></td><td>0003</td><td>1</td><td>Z3000050</td><td>1,410</td><td>1</td><td>1</td><td>1,410</td><td></td><td></td></tr>
<tr><td></td><td></td><td>0004</td><td>1</td><td>Z4101050</td><td>2,220</td><td>1</td><td>1</td><td>2,220</td><td></td><td></td></tr>
<tr><td></td><td></td><td>0005</td><td>1</td><td>Z5000</td><td>640</td><td>1</td><td>1</td><td>640</td><td></td><td></td></tr>
<tr><td></td><td></td><td>0006</td><td>1</td><td>ZE100</td><td>1,000</td><td>1</td><td>1</td><td>1,000</td><td></td><td></td></tr>
</table></td></tr>
<tr><td>1-6</td><td>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td><td>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td></tr>
</table>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약국 조제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2항 01목"(조제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4.~2024.9.18. 조제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가능하나,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함.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9월 14일 이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한시적 수가 적용기간에 내방했을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4일 0시 이후부터 2024년 9월 18일 24시 이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5	한시적 수가 적용기간 동안 발행된 처방전을 2024년 9월 18일 24시 이후에 내방하여 조제했을 경우 수가적용 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4일 0시 이후부터 2024년 9월 18일 24시 이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6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3' 또는 '5, 6, J'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함

5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추가 인상

❶ 주요내용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추가 가산**

- 추가 가산되는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❷ 적용대상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적용 제외

❸ 적용기간

○ 2024년 9월 11일 ~ 9월 25일(15일간)

❹ 신청 및 안내

○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①'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IE200~IE209)' 와 코로나19 유행 대비 ②'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한시적 수가 코드', 신설되는 추석연휴 대비 ③'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I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II		
IE31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31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31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316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31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31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319	**(비상)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III**	**511.58**	**41,540**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2024.9.11.~2024.9.25. 진료분에 한해서**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V2200	*	1	1	*	20240911
01	03	0002	1	IE200	*	1	1	*	20240911
01	03	0003	1	IE300	*	1	1	*	20240911
01	03	0004	1	IE310	*	1	1	*	20240911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25.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25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예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였다면,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4" 필수 기재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2-7</td><td>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청구방법은?</td><td>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한시적 수가 코드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IE309)' 와 함께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td></tr>
<tr><td colspan="3">(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변경일</th></tr>
<tr><td>01</td><td>03</td><td>0001</td><td>1</td><td>IE200</td><td>*</td><td>1</td><td>1</td><td>*</td><td>20240911</td></tr>
<tr><td>01</td><td>03</td><td>0002</td><td>1</td><td>IE300</td><td>*</td><td>1</td><td>1</td><td>*</td><td>20240911</td></tr>
<tr><td>01</td><td>03</td><td>0003</td><td>1</td><td>IE310</td><td>*</td><td>1</td><td>1</td><td>*</td><td>20240911</td></tr>
<tr><td>L</td><td>81</td><td>0004</td><td>1</td><td>V2200</td><td>*</td><td>1</td><td>1</td><td>*</td><td>20240911</td></tr>
</table>
</td></tr>
</table>

6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❶ 주요내용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50% 추가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 포함

❷ 적용대상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❸ 적용기간

○ 2024년 9월 11일 ~ 9월 30일(20일간)

❹ 신청 및 안내

○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 코드 산정 시 **①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와 신설되는 ②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별도 산정**(단,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별도 첨부파일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하여**,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와 함께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 청구방법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2-1</td><td>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td><td>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하여 수가 산정 가능하나, <u>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u>함
*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td></tr>
<tr><td>2-2</td><td>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td><td>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td></tr>
<tr><td>2-3</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td><td>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td></tr>
<tr><td>2-4</td><td>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td><td>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해당 처치·수술 등이 시작된 환자까지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 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td></tr>
<tr><td colspan="3">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table>
<tr><th>구분</th><th>응급실 입원</th><th>응급실 퇴실</th><th>처치·수술</th></tr>
<tr><td>날짜 및 시각</td><td>2024.9.11. 오전 10시15분</td><td>2024.9.12. 오전 8시30분</td><td>2024.9.12. 오전 3시30분</td></tr>
<tr><td>MS005 기재방법 (From/To)</td><td colspan="3">202409111015/2024091200830</td></tr>
<tr><td>JS010 기재방법</td><td colspan="3">202409120330</td></tr>
<tr><td>MT046 기재방법</td><td colspan="3">1</td></tr>
</table></td></tr>
</table>

연번	질 의	답 변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기존 응급의료행위의 항, 목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청구함 다만, 기존 응급의료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일 경우, 한시적 수가는 기존 행위와 별도로 **반드시 01항~10항에 기재하여 청구**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❶ 주요내용

○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❷ 적용대상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 총 163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대상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른 격리 치료

❸ 적용기간

○ 2024년 9월 11일 ~ 9월 30일(20일간)

❹ 신청 및 안내

○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환자(IE018)’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2, 1851

*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코로나19 입원 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18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2,460.41	199,790

참고2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코로나19환자 상병분류기호 기재 방법은?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혹은 부상병** 상병분류기호에 "**U071"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 U07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분류기호
1-3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코로나19환자가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1회 산정**함
1-4	격리 입원의 기준은?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격리치료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여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1-5	응급실에서 실제 격리실 입원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경우도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①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후 퇴원, ②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가-6 낮병동 입원료' 수가가 산정된 경우는 산정 불가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 2022-49호, '22.3.1. 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다. (3) 낮병동 입원료
1-6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연번	질 의	답 변
1-7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8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 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 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 체류 또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격리 입원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해당 기관의 응급실 또는 병동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2-6</td><td>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td><td>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코드는 L항 82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td></tr>
<tr><td colspan="3">(예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검사)결과 양성인 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줄</th><th>코드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변경일</th></tr>
<tr><td>01</td><td>03</td><td>0001</td><td>1</td><td>IE018</td><td>*</td><td>1</td><td>1</td><td>*</td><td>20240911</td></tr>
<tr><td>L</td><td>82</td><td>0002</td><td>1</td><td>AK200</td><td>*</td><td>1</td><td>3</td><td>*</td><td>20240911</td></tr>
</table></td></tr>
</table>

별첨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목록(9.11.~9.30.)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100303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종합병원
2	서울	11100397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종합병원
3	서울	11100729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종합병원
4	서울	11100907	서울성심병원	종합병원
5	서울	11100982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종합병원
6	서울	11101253	녹색병원	종합병원
7	서울	11101334	부민병원	종합병원
8	서울	11101393	의료법인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종합병원
9	서울	1120170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10	서울	11206861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병원
11	서울	11207299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병원
12	부산	21100080	대동병원	종합병원
13	부산	21100209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4	부산	21100225	삼육부산병원	종합병원
15	부산	21100306	재단법인일신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종합병원
16	부산	21100551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종합병원
17	부산	21100586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종합병원
18	부산	21100616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종합병원
19	부산	21100632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종합병원
20	부산	21100641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종합병원
21	부산	21202907	부산맘아동병원	병원
22	부산	21203172	아이(i)서울병원	병원
23	부산	21203369	행복한어린이병원	병원
24	부산	21203628	부산아동병원	병원
25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26	대구	37100327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종합병원
27	대구	37100386	곽병원	종합병원
28	대구	37100491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종합병원
29	대구	37100556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종합병원
30	대구	37204840	열린아동병원	병원
31	인천	31100015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32	인천	31100023	인천기독병원	종합병원
33	인천	31100171	부평세림병원	종합병원
34	인천	31100619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종합병원
35	인천	31100724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종합병원
36	인천	31100970	검단탑병원	종합병원
37	인천	31101011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종합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38	인천	31101186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종합병원
39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40	인천	31101267	인천세종병원	종합병원
41	인천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42	인천	31212298	검단위키즈병원	병원
43	인천	31101160	현대유비스병원	종합병원
44	인천	31101330	비에스종합병원	종합병원
45	인천	31101429	인천힘찬종합병원	종합병원
46	인천	31101216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종합병원
47	인천	31212034	청라연세어린이병원	병원
48	인천	31211674	송도미소어린이병원	병원
49	광주	36100528	신가병원	종합병원
50	광주	36100951	광주한국병원	종합병원
51	광주	36100960	선한병원	종합병원
52	광주	36101010	광주희망병원	종합병원
53	광주	36101061	광주센트럴병원	종합병원
54	광주	36101079	상무병원	종합병원
55	광주	36201472	미래아동병원	병원
56	광주	36203173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57	광주	36203530	우리아동병원	병원
58	광주	36204251	아이맘아동병원	병원
59	광주	36204510	한마음병원	병원
60	광주	36204633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
61	광주	36204773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62	광주	36205061	화정아동병원	병원
63	대전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종합병원
64	대전	34100091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종합병원
65	대전	34100288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종합병원
66	대전	34100431	대전한국병원	종합병원
67	대전	34202455	조이병원	병원
68	대전	34202943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69	대전	34203044	대전코젤병원	병원
70	대전	34203109	봉키병원	병원
71	대전	34203231	코젤병원	병원
72	울산	38100088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종합병원
73	울산	38100151	서울산보람병원	종합병원
74	울산	38100321	울산병원	종합병원
75	울산	38100584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종합병원
76	울산	38100622	의료법인 정안의료재단 울산중앙병원	종합병원
77	세종	34100393	의료법인 영제 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종합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78	경기	31100180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종합병원
79	경기	31100228	광명성애병원	종합병원
80	경기	3110031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81	경기	311003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82	경기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83	경기	31100716	강남병원	종합병원
84	경기	31100856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종합병원
85	경기	3110089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종합병원
86	경기	31100961	오산한국병원	종합병원
87	경기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88	경기	31100996	남양주한양병원	종합병원
89	경기	31101003	현대병원	종합병원
90	경기	31101046	순천의료재단 성남정병원	종합병원
91	경기	31101089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종합병원
92	경기	31101101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종합병원
93	경기	3110115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94	경기	31101259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종합병원
95	경기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96	경기	31101437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종합병원
97	경기	31101500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더자인병원	종합병원
98	경기	31208321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99	경기	31208495	튼튼어린이병원	병원
100	경기	31209254	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01	경기	31210279	아이원병원	병원
102	경기	31211101	웰봄병원	병원
103	경기	31211381	김포아이제일병원	병원
104	경기	31211399	동탄성모병원	병원
105	경기	31203981	의료법인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병원
106	경기	31100911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종합병원
107	강원	32100078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108	강원	32100086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109	충북	33100012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종합병원
110	충북	33100063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종합병원
111	충북	33100179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종합병원
112	충북	33100250	(재)베스티안병원	종합병원
113	충북	33201226	아이웰어린이병원	병원
114	충북	33200891	의료법인 한미의료재단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병원
115	충북	33100225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종합병원
116	충남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117	충남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18	충남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119	충남	34100164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종합병원
120	충남	34100253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종합병원
121	충남	34100342	아산충무병원	종합병원
122	충남	34100407	의료법인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종합병원
123	충남	34202714	두정이진병원	병원
124	전북	35100036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종합병원
125	전북	35100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126	전북	351000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127	전북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종합병원
128	전북	35100222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종합병원
129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병원
130	전북	35202238	전주다솔아동병원	병원
131	전북	35202360	온누리아동병원	병원
132	전남	36100226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133	전남	36100234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134	전남	36100251	순천중앙병원	종합병원
135	전남	36100439	목포한국병원	종합병원
136	전남	36100471	여수전남병원	종합병원
137	전남	36100846	의료법인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종합병원
138	전남	3610097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139	전남	36100994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종합병원
140	전남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141	전남	36202991	목포아동병원	병원
142	전남	36203203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병원
143	전남	36203939	남악아동병원	병원
144	경북	3710004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145	경북	37100106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종합병원
146	경북	37100211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종합병원
147	경북	3710035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종합병원
148	경북	3710039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149	경북	37100483	의료법인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	종합병원
150	경남	381000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151	경남	38100118	창원파티마병원	종합병원
152	경남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153	경남	38203774	거제아동병원	병원
154	경남	38204606	아이사랑병원	병원
155	경남	38204614	서울아동병원	병원
156	경남	38204789	서울아동병원	병원
157	경남	38204983	다나병원	병원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58	경남	38205459	서울아동병원	병원
159	경남	38205556	양덕서울아동병원	병원
160	경남	38206030	창원튼튼i병원	병원
161	제주	39100022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162	제주	391000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163	제주	39100171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종합병원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 17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033-739-15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5	추석 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6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 1752, 18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